

2019년 해남읍 정기종합감사 결과



2019년 해남읍 정기종합감사 실시 결과

I 감사실시 개요

1. 기본방침

- 가. 공직자 기본자세 확립 및 취약업무 지속 감사
- 나. 지도와 교육을 병행한 감사로 행정의 올바른 방향 제시
- 다. 공사, 용역 및 인ㆍ허가 민원 불편사항 해소에 감사 중점
- 라. 부패성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및 적극행정에서 발생한 과오는 면책 추진

2. 감사 중점사항

- 가. 군정시책을 지원하는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의 감사 실시
 - 업무의 틀을 바로 잡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감사
 - 행정의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방안 검토

나. 공직자 기본자세 확립 및 취약업무 지속 감사

- 공직자 기본자세 6대 과제 지속 점검하여 행정의 기본 체질 강화
- 행정재산, 민간위탁사무 등 취약업무 주기적 점검체계 확립
- 취약업무 지속 발굴, 행정의 자기 통제 시스템 확립
- 언론보도, 군의회 지적사항 등에 대해 위법·부당 여부 점검
- 계약 및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여부 중점 감사

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 감사대상을 일한 내용보다는 부작위 행위로 전환
- 적극적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는 과감히 면책

라. 부패성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 적용

- 감사결과 문제점, 위법사항 발견 시 책임소재 철저히 규명
- 공금횡령, 토착비리, 고의적 봐주기성 업무처리 반드시 문책
- 무사안일, 책임회피, 업무 및 고의 민원사항 처리 지연행위 상급자까지 연대 책임

Ⅱ 분야별 지적사항

가. 일반행정 분야

1)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사업 추진 소홀

가) 지적사항

- 해남읍에서는 2018.5.21.부터 2019.3.15. 감사일 현재까지 지급 대상 445 세대(명)중 94세대(명) 에게만 태극기를 지급하는등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 사업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태극기 보급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미 지급된 태극기에 대해서는 지급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 각종 문서 처리 소홀

가) 지적사항

- 해남읍에서는 2018.10. - 2019.2. 기간 중 해당 실과에서 시행한 문서 즉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사업 알림등과 관련된 접수문서를 임의 추출한 24건 중 15건은 적정하게 처리하

였지만 9건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 · 공사, 환경 분야

1) 사회보험료 정산업무 소홀

가) 지적사항

- 해남읍에서는 "○○ 마을안길 안전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가입 근로자가 없는데도 준공대가 지급 시 이에 대한 정산 없이 준공 대가를 지급하여 45천원을 과다지급 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정산 소홀로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험료 45,000원 회수하시고 앞으로는 보험료 정산 업무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2) 환경보전비 계상 및 정산 소홀

가) 지적사항

- 해남읍에서는 2건의 공사에 대하여 준공과정에 환경보전비가 적정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사용실적 및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장사진)를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고 제출한 사용내역이 환경보전비 정산 대상인지 불분명한 경우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여야 하나, 제출 사항만 그대로 인정 처리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등 환경보전금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관련법에서 정한 환경 보전비 계상 및 사용 확인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건설공사 감독업무 소홀

가) 지적사항

- 해남읍에서는 3건의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내역서와 다르게 시공한 것에 대하여 설계변경 없이 대가를 지급하여 712,000원(제경비 포함)의 예산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에 해당하는 712,000원은 회수하시고, 이후 계약 금액 조정 사유 발생 시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하시고, 공사 감독자는 건설 공사 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수익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금액 산정 소홀

가) 지적사항

- 해남읍에서는 3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격조사 1인으로부터 제출된 견적가격에 대하여 가격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견적 비교나 수의시담 없이 동일한 견적서를 첨부하여 기초금액 대비 100%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수의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금액의 산정은 법령에 정한 방법으로 비교 조사하여 가장 경제적인 금액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5) 건설공사 준공대가 지급 지연

가) 지적사항

- 해남읍에서는 「해남 ○○○ ○○○ 보수공사」등 2건의 준공대가를 지급 하면서 각 8일과 9일이 소요되어 적정 처리기간인 5일보다 각 3일, 4일의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 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대가 지급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세입·세출·회계 분야

1) 현금지급 채권자 영수인 날인 미실시

가) 지적사항

- 해남읍에서는 2017. 3. 31. "시책업무 추진여비" 600,000원 등 총 17건을 현금 지급하면서 영수인(수령자) 날인 또는 현금전달자 및 최종수요자의 영수증 없이 집행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세출예산 현금지급시 영수인 날인 또는 해당자로부터 영수증을 징구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 세출예산 지출과목 미 준수

가) 지적사항

- 해남읍에서는 사안에 따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여야 하는 지출행위를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였으며, 다회용컵 자외선 소독기와 행정차량 후방카메라는 자산취득비에서 구입해야 하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각각 구입하였고, 우수사례 현장평가 출장 여비는 국내여비에서 지출하여야 하나 월액여비에서 지출하는 등세출예산을 부 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세출예산 집행 시 적정한 예산과목에서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3) 건축물 일제조사 업무 추진 소홀

가) 지적사항

- 해남읍에서는 6건의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결과 과세자료로 제출 이 되지 않아 재산세 4건 228,040원, 취득세 4건 1,788,810원이 부과 누 락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조사 누락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4건 228,040원, 취득세 4건 1,788,810 원 부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4) 이륜자동차 자동차세 부과 소홀

가) 지적사항

- 해남읍에서는 3건의 이륜차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자동차세 4건 85,810워을 과세누락하게 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누락된 자동차세 4건 85.810원은 부과요구하시기 바랍니다.

5) 도로점용 허가분 등록면허세 부과 소홀

가) 지적사항

- 해남읍 도로점용 허가 및 면허세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이를 소홀히 하여 5명의 도로점용허가 관련 등록면허세 64.800워을 부과 누락시킨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 6건 64,800원을 부과·징수하시고, 부과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라. 복지 · 보건분야

1) 방역업무 추진 소홀

가) 지적사항

- 해남읍에서는 방역일지 부분 미작성·방역약품 수불대장 불일치 등 방역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업무담당자는 방역사업 추진계획을 숙지하여 각종 방역대장을 정확히 작성하고 적기에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땅끝보듬자리 지원사업 업무 소홀

가) 지적사항

- 해남읍에서는 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원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재위촉 및 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19. 2. 11.에 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였으며, 운영위원회도 반기별로 개최하지 않은 등 땅끝보듬자리 지원사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업무담당자는 관련 조례에 맞게 땅끝보듬자리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 영하시기 바랍니다.

3)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부적정

가) 지적사항

- 해남읍에서는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서를 받은 대상자가 아닌 시각 6급 장애인 등 3명에 대해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하는 등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업무담당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의거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시기 바라며, 잘못 발급된 표지에 대해서는 교체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4) 긴급지원 업무 추진 소홀

가) 지적사항

- 해남읍에서는 2017년 2월, 2018년 1월, 2018년 11월 이장회의 자료를 통한 3 회 홍보에 그치는 등 긴급지원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업무담당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많은 군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시기별 적극적인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 농수축산·산림분야

1) 밭농업직접지불금 업무추진 소홀

가) 지적사항

- 해남읍에서는 밭농업직접지불금 신청접수 및 대상농지 선정 절차에서 농지 전용 절차를 거친 농지를 제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지전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없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밭농업직불금 362,170원 지급하 여 밭농업직접지불금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농지전용된 토지에 지급된 밭농업직불금 362,170원은 회수 조치하시고, 업무담당자는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 소홀

가) 지적사항

- 해남읍에서는 농업인에 해당되지 않아 동 지원사업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신청인이 농지원부를 제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농업인으로 인정하고, 동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2018년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877.200원을 집행하여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시 적격 여부 확인으로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오 지급된 학자금 877,200원을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3) 조사료 종자 지원사업 추진 소홀

가) 지적사항

- 해남읍 17필지의 농지는 2017년 3월경 '2018년 경관보전직불제 수요조사' 시 2017년 늦가을에 경관작물인 유채를 파종한다고 신청되어 있으므로, 2017년 8월에 조사한 축산분야 조사료 종자 지원사업에서는 경관보전직불 제 대상농지를 제외하고 신청을 접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남읍에서는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농가에서 신청한 사항 그대로 접수·처리하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조사료 종자 지원사업 신청접수시 경관보전직불제 등 타 사업과 연관이 없는지 확인 후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바. 민원 · 민방위 · 지역경제분야

1) 해남읍 5일시장 사용료 징수업무 등 소홀

가) 지적사항

- 해남읍에서는 시장 사용자가 사용료를 전월말까지 납입할 수 있도록 징수결의 조치 등 납부고지 하여야 함에도 2018. 1월부터 2019. 3월 현재까지 매월 사용료를 지연 부과하였음

나) 조치의견

- 시장사용료는 해남군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전월말까지 납부 할 수 있도록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2) 옥왹광고물 관련 법규 연찬 소홀

가) 지적사항

- 해남읍에서는 상기 변경된 법규를 숙지하지 못하고 자사광고물로써 표시 기간 제한이 폐지된 상기 7건의 옥외광고물에 대해 표시연장 신청을 하 도록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옥외광고물 관련 법규 연찬 소홀로 표시연장 안내문을 잘못 발송한 7건에 대해 재 안내하시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연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륜자동차 등록 관련 전자수입인지 소인 처리 소홀

가) 지적사항

- 해남읍에서는 2017. 1. 4.부터 2019년 3월 현재까지 이륜자동차 등록업무와 관련으로 제출받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117건을 관련 절차를 몰랐다는 사유로 전자적 소인 처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미 소인된 전자수입인지 117건은 관련 전산에 수입인지 고유번호를 입력 하여 소인처리 하시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한 업무 추진을 촉구합니다.